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14

대 전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구합102593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
원 고	1. A
	2. B
피 고	[redacted]시장
변 론 종 결	2017. 10. 18.
판 결 선 고	2017. 11. 8.

주 문

1. 피고가 2016. 10. 25.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14

가. 원고들은 주식회사 C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의 공동대표이사이고,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인 D, E, F는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1,000,000주 중 624,75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.

나. 원고들은 2014. 3. 이 사건 회사 주주인 G, H, I, J(이하 통칭하는 경우 '이 사건 쟁점 주주'라 한다)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75,250주(= 원고 A 185,260주 + 원고 B 189,990주, 이하 '이 사건 쟁점 주식'이라 한다)를 취득하였다.

다. 원고들은 2014. 5. 9.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[redacted]시 K 소재 토지, 건물, 구축물, 차량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증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(원고 A 19,645,380원, 원고 B 20,146,970원)를 신고·납부하였다.

라. 원고들은 2016. 8. 30. 피고에게,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L(2010. 10. 23. 사망, 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이 이 사건 쟁점 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,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주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지방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, 피고는 2016. 10. 25.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가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마.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. 11. 3.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장은 2017. 2. 13.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6,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14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들의 주장

이 사건 쟁점 주식은 망인이 이 사건 쟁점 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,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주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에 불과하므로, 이는 구 지방세법(2014. 5. 20.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지방세법'이라 한다)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그런데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, 5, 9, 10,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쟁점 주식은 망인이 이 사건 쟁점 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,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상속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.

가)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다. 이 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14

건 쟁점 주주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던 망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. 이 사건 쟁점 주주는 이 사건 회사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,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,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다.

나)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, 2016. 6. 15.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원고들의 어머니인 E의 상속세 신고 내용에 망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인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빠진 것으로 보고, 이를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 3,292,949,599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. 이후 원고들과 E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다.

다) 이 사건 쟁점 주주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전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그 중 G, H, I은 원고들로부터 실제로 매매대금을 받기도 하였다.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,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전받을 때 매매의 형식을 취한 것은,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, 이를 알고 있었지만 고액의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, 원고들과 이 사건 쟁점 주주가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전받았다고 하여 망인과 이 사건 쟁점 주주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.

라) 이 사건 쟁점 주주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, 원고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된 이후 이를 모두 환급받았다.

2) 이 사건 쟁점 주식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'주식의 취득'에 해당하는지 여부

가)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14

속자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,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(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두7448 판결,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두21369 판결 등 참조).

나)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이 사건 쟁점 주주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차명 주주로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상속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주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다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망인 또는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임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일단 이 사건 쟁점 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, 그 후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양도받은 때 비로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반면(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), 명의신탁은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·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인바(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다카2653 판결 등 참조),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소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14

유권을 대내적 관계에서 보유하고 이를 관리·수익하다가, 단지 이 사건 쟁점 주주로부터 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, 이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'주식의 취득'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소결

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방승만

판사 김종찬

판사 임한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14

(별지)

관계 법령

▣ 구 지방세법(2014. 5. 20.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(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)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4조를 준용한다.

▣ 구 지방세기본법(2014. 5. 20.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47조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)

법인(주식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)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(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)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1. 무한책임사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14

2.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.

▣ 국세기본법

제14조(실질과세)

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(名義)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

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 끝.